

#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 근거이론적 방법 적용\*

노성훈\*\*, 안재경\*\*\*

##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사관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뒤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88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까다로운 피해자', '믿지 못할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심정적지지'로 나타났으며 중심현상은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사건 해결의 난관', '열악한 수사 환경'으로 나타났고, 중재적 조건은 '피해자 고통의 이해', '가해자 심리 인식', '언론에 대한 인식', '사회환경적 원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극하지 않는 표현', '피해자 배려와 공감'으로 나타났고, 결과는 '직업적 의무 수용'으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경찰로서 의무 찾아가기'로 상정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범죄 수사에 있어서 확인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0.12.31.4.129>

❖ 주제어 : 불법촬영범죄, 성범죄, 수사관, 근거이론, 질적 분석

\*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2019)에서 수집한 불법 촬영물 수사대응 관계자의 심층면접 조사자료를 사용하되 원래 보고서와는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새롭게 작성되었음.

\*\* 주저자 :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E-mail: rohnpu@gmail.com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종래 성폭력범죄는 정신적 및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는 흉악한 범죄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경부터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일반적으로 ‘불법촬영범죄’로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이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인터넷을 매개로 저질러지기 때문에 최초의 촬영자뿐만 아니라 익명성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재생산과정에 참여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된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장미혜·이미정·고현승·김현아·노성훈, 2019). 최근 불법촬영범죄의 양적 증가는 공식범죄통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의「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에 412건에 불과하던 불법촬영범죄는 2018년에 이르러 총 2,388건이 발생해 약 5.8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불법촬영범죄는 재범률이 75%에 달해 다른 성범죄(예: 강제추행 -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 61.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불법촬영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있으며 여기에는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 및 적발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4대 추진 전략이 포함되었다(장미혜 외, 2019: 24).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 처벌 공백을 없애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데 노력해왔다. 경찰청 역시 불법촬영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각 지방청별로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부처의 이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실제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피해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과정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소 및 재판단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의 회복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불법촬영사건 수사는 대부분 각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수사관에 의해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경찰수사관은 실제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호라는 수사의 양대 이념에 충실하도록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론 수준의 당위성은 현실에 있어서 종종 수사관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 자신이 취급하는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및 사건의 처리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성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신념을 가진 수사관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일 것이다. 둘째, 피해자를 바라보는 수사관의 인식 또한 사건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처리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형화된 피해자’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의 성인지각수성 수준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사과정에 종종 발생하는 2차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그동안 일반적인 성폭력에 관해서는 수사관의 인식과 태도를 다룬 경험적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이명신·양남미, 2011; 신주호, 2010). 하지만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현재까지 발표된 불법촬영범죄 연구들의 대부분은 법률적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전운경, 2016; 문성도, 2012; 김현아, 2017; 박혜림, 2017). 다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불법촬영범죄 수사관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18년 불법촬영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수사관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별도 제작하기도 하였다.<sup>1)</sup> 경찰청은 2019년에 배포한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 속에 수사관들이 불법촬영범죄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수사현장에서 불법촬영범죄사건을 다루고 있는 경찰수사관들이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1)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경찰편)

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과연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구는 불법촬영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수사관들의 인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급증하는 불법촬영범죄와 더불어 언론과 대중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는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문제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주로 불법촬영 피해자의 시각에서만 조명될 뿐 수사관들의 관점이 심도 깊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선에서 실제로 불법촬영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불법촬영범죄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불법촬영범죄를 수사하면서 경찰관들이 경험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현상을 가급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불법촬영범죄 수사를 둘러싼 중심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맥락을 밝히며 궁극적으로 경찰관들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성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범죄사건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정립한다.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Krahe(1991)에 따르면 강간 사건의 수사관은 해당 사건이 ‘신뢰할만하다(credible)’고 판단될수록 문제가 된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사건 신뢰도는 피해자에 대한 신뢰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Spohn, White과 Tellis(2014)는 피해자의 성향과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일명 ‘피해자 신뢰도’가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수사관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는 사건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분석 결과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할수록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밖에도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태도는 용의자에 대한 체포 여부,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소되는 사건과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의 규모를 결정하는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est, Ashe, Lawrence, McPhee & Wilson, 2007).

그런데 경찰수사관이 피해자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단지 수사과정에 드러난 객관적 정보만을 토대로 하지는 않는다. 개개인의 수사관들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 차원의 (종종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강간통념’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다. 강간통념에는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거나, ‘진정한 강간’은 모르는 사이에만 발생한다거나,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항했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포함된다(Wentz & Archbold, 2012). LeDoux와 Hazelwood(1985)에 의하면 일부 경찰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일단 의심을 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강간통념의 정도가 강한 수사관일수록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외모나 옷차림, 그리고 언행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leath & Bull, 2017). 결국 수사관들의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은 수사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Edward & MacLeod, 1999).

더 나아가 이러한 수사관들의 인식과 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할지 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피해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소위 ‘진정한 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당한 피해가 소위 ‘진짜 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피해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 Ullman, 2010; Estrich, 1987; Koss, 1993; Koss, Bachar, Hopkins, & Carlson, 2004; LaFree, 1989; Venema, 2014).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들의 태도는 수사기관에 만연해 있는 강간통념과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성폭력피해를 신고한 후 자칫 강간통념을 지닌 수사관으로부터 도리어 피해사실에 대해 비난을 받거나 2차 피해를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Ahrens, Campbell,

Ternice-Thames, Wasco, & Sefl, 2007; Chen & Ullman, 2010). 실제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수사과정에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Campbell과 동료들(2001)의 연구는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의 대부분은 수사과정에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는 가해자와 무슨 관계인지 등에 관해 질문을 받거나, 수사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이 기소처분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2006).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갖는 우려는 종종 현실이 되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2차 피해는 수사과정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대, 2009). 수사과정에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반복되는 진술 요구, 사건과 무관한 질문, 비인격적 대우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과 모멸감을 유발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켜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만들 위험도 있다(정혜옥, 2018; Grubb & Turner, 2012). 2차 피해의 유발요인으로는 앞서 설명한대로 강간통념으로 대표되는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연구들에 따르면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높은 경찰관일수록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질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림, 2019; 장미정·조은경, 2004). 더욱이 전통적으로 경찰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고정관념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데, 여러 국내외 연구들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강간통념에 있어서도 경찰 집단이 더 높은 수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신·양난미·김정희·문유정, 2015; Ward, 1988).

## 2.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

국내에서 불법촬영범죄를 다룬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법제도적 차원의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김영철, 조현옥, 2016; 배상균, 2016; 송승현, 2017). 범죄학 분야의 연구들조차도 대부분 불법촬영범죄를 유형화하거나 발생현황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심현정, 신소라, 조운오, 2017; 조운오, 2016). 다만, 불법

촬영범죄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경험적 연구로서 홍영은·박지선(2018)의 연구가 유일한데 아쉽게도 일반인들의 인식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과 태도를 다룬 국내 연구는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정은 해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Zvi와 Shechory-Bitton(2020)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강간과 같은 전통적인 성폭력범죄 위주로 이루어져온데 반해 사이버 성범죄를 둘러싼 형사사법기관의 인식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불법촬영범죄 연구들은 대부분 개념과 현상의 본질을 다루거나 관련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정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불법촬영범죄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개념적,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헌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McGlynn & Rackley, 2017). 다만 최근에 발표된 Zvi와 Shechory-Bitton(2020)의 연구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을 다룬 거의 유일한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피해자 스스로가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전 애인으로부터 촬영된 사진이라는 두 조건을 설정하고 경찰수사관의 피해자 및 가해자 비난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두 조건 모두에 있어서 경찰관은 가해자가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을 향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만 이 연구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불법촬영범죄사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찰수사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2019)에서 수집한 불법촬영물 수사대응 관계자의 심층면접 조사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에 관해 경찰수사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뷰의 녹취록을 활용하였다.<sup>2)</sup> 면접은 2019년 4월부터 7월

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촬영사건 수사의 경험이 있는 수사관 총 8명이다. 남성 5명, 여성 3명이고 연령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경찰 근무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27년까지이고 수사경력은 2년에서 19년까지로 다양하다. 면접방식으로 반구조화 설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가급적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면접자 1명과 보조면접자 1명이 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면접내용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녹취파일은 전사가 모두 완료된 뒤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찰서 내의 조사실이나 카페 등에서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에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수사관	성별	연령대	계급	소속	경찰근무연수	현부서 근무연수	수사경력연수
A	여	40	경위	서울청 A경찰서 여성청소년과	14	3	12
B	남	30	경장	서울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6	4	4
C	여	30	경사	경기남부청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	8	2	2
D	남	50	경위	충남청 D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6	4	13
E	남	40	경위	충남청 E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3	3	10
F	여	30	경장	충남청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5	4	4
G	남	50	경위	광주지방청 G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7	4	15
H	남	40	경위	광주지방청 H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2	7	19

2) 2019년 발간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전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해당 연구보고서의 분석과 차별화되도록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 2. 분석방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을 다룬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선택한 분석방법은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적 방법이다. 근거이론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질적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13: 346). 특히 연구 주제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어떤 적절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Stern, 1980).

자료의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대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단계 코딩과정으로 진행했다. 1단계 개방코딩과정에서는 인터뷰 녹취록을 해체시킨 뒤 개념들을 발견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코딩의 목적은 자료의 코드들을 정확하게 분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분석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Braun & Clarke, 2016; 한유리, 2018에서 재인용). 인터뷰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특정 현상을 나타내는 문장과 단어들을 추출한 뒤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개념화하였다. 유사한 의미를 담은 개념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만들고 재차 관련된 하위범주들을 묶어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런 후 각 하위범주와 범주에 적절한 이름을 부여했다. 2단계 축코딩과정에서는 범주들 중에서 중심현상을 파악하고 나머지 범주들과의 관련성에 따라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인과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현상의 원인과 조건을 개념화하였다(김영천, 2013: 379). 마지막으로 선택코딩과정에서는 여러 범주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핵심 범주를 도출한 뒤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교화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연구자들은 공동 작업을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1저자와 2저자가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자료의 코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일치된 범주를 사용하였다. 일치되지 않은 범주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1저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잠정적 분석결과를 질적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였고 피드백을 받아 최종결과를 정리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을 통해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8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개방코딩 결과

개념	하위범주	범주	
예민한 피해자 정말 많음	과민한 피해자	까다로운 피해자	
피해를 당하고 나서 극도로 예민해짐			
2차 피해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함			
피해자들이 말을 트집 잡아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됨	트집 잡는 피해자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음			
불구속 수사한다고 피해자가 화를 냄	항의하는 피해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함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취급을 한다고 화를 냄			
조금만 불리한 말에도 화를 내서 물어보기 어려움			
피해자의 거짓말로 가해자가 억울한 경우가 많음	거짓 피해자	믿지 못할 피해자	
불륜을 숨기려고 신호하는 피해자가 있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꽃병이 있음			
경찰서에 와서 당당한 사람은 특이한 사람임	진정성 없는 피해자		
단지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는 피해자가 있음			
조사해보면 약간 이상한 경우가 있음			
문제가 많아 보이는 피해자가 있음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내준 건 피해자의 책임이 큼	피해자 책임		
피해자가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함			
성폭력 가해자들이 입는 사회적 데미지가 큼	가해자 처지 공감		가해자에 대한 심정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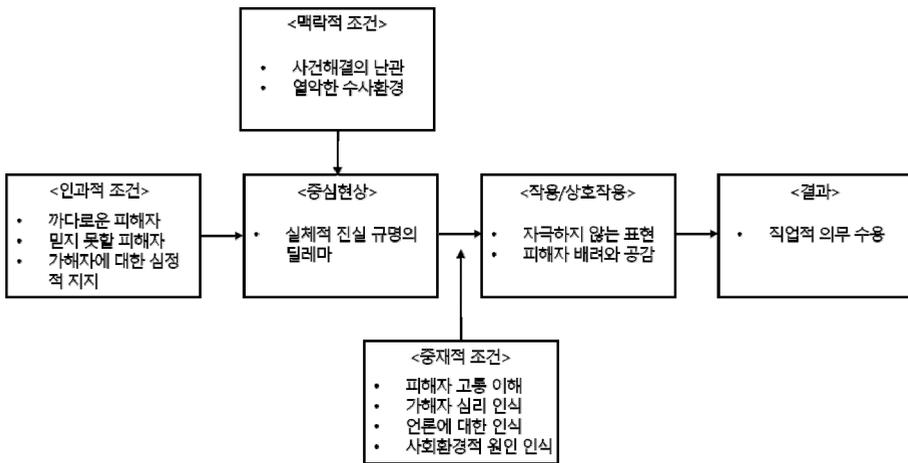
개념	하위범주	범주
가해자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님	가해자의 평범함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임		
자발적 촬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 처리	
증거가 불충분해서 입건할 수 없음		
촬영의 동의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 처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해자 위주로만 수사하는 건 잘못됐음	피해자 위주 수사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
피해자가 주장하면 믿어줄 수밖에 없음		
필요한 질문도 하지 못하도록 제약됨	수사 제약	
2차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부당함		
수사매뉴얼 준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가해자 손과 카메라만으로 추적하기 어려움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		
휴대폰을 바꾸거나 없애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	증거 인멸	사건 해결의 난관
증거를 없애기 전에 신속히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함		
포렌식으로도 증거가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증거 확보의 기술적 한계	
포렌직 의뢰 후 결과를 받기까지 오래 걸림		
디지털 증거분석기술이 부족함		
수사과정에 착취영상을 계속 봐야 해서 스트레스 쌓임	과중한 업무부담	
수많은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피곤함		
여성청소년과에 오려는 인원이 없음	수사 인력 부족	열악한 수사 환경
여경이 부족해서 민원을 많이 당함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수사 지원 미비	
예산과 장비가 부족함		
육만 먹고 성과를 인정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성관계 사건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	피해자의 수치심	
피해자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 트라우마가 생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피해자 고통 이해
불법촬영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어려움		
아무 잘못 없이 촬영당한 피해자가 안됐음	피해자의 억울함	
원치 않는 일을 당한 피해자가 안됐음		
조사 받은 후 무섭고 두려워 함	두려워하는 피해자	
촬영물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함		
습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름	가해자의 반복적 습성	가해자 심리 인식
습성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지 않음		

개념	하위범주	범주	
취향이 다를 뿐 나쁜 사람은 아님	독특한 성적 취향		
성적 취향이 다름			
소심해서 쉽게 자백함	소심한 가해자		
내성적이고 순진한 가해자가 많음	죄의식 없는 가해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	총동적 가해자		
호기심 때문에 짝은 경우가 많음			
성범죄자는 거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함			
총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사회적 데미지가 큼	언론보도의 부담감		언론에 대한 인식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			
피해자 조사가 언론에 많이 나와 조심스러움			
문제되는 일부만 보도해서 경찰관 사기가 저하됨			
언론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커짐	언론의 책임		
대중매체의 관음증적 사회분위기를 만듦	대중매체의 영향	사회 환경적 원인 인식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따라함			
음란물을 보고 촬영 욕구가 생겨남	음란물의 영향		
피해자가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함	말조심하기	자극하지 않는 표현	
오해하고 상처 받을 수 있어서 말을 조심해야 함			
사람 봐서 말의 수위를 조절해야 함			
적절한 단어선택이 부담됨	신중한 단어 선택		
순화된 단어를 사용함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함	피해자 배려하기	피해자 배려와 공감	
우는 피해자를 안정시켜 줌			
피해자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함	피해자 기분 맞춰주기		
진지하게 수사하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함			
피해자의 감정을 건들이지 않고 물어봐야 함	피해자 신뢰 얻기		
도와줄 테니 믿어달라고 함			
피해자의 편이라는 확신을 줌	경찰로서 임무 인식	직업적 의무 수용	
경찰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경찰로서 피해자를 더 배려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음			
불법촬영은 엄하게 처벌해야 함			적극적 수사
범죄자가 확실히 처벌받도록 노력함			
수사관의 열정과 의지로 최선을 다해야 함			

## 2. 축코딩

불법촬영사건을 경찰수사관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축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바탕으로 중심현상을 발견한 후 이와 관련된 인과적·맥락적·중재적 조건을 도출하고 수사관들의 작용/상호작용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인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불법촬영사건 경찰수사관의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가.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참여자의 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김정겸·김지숙, 2010에서 재인용). 심층면접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심리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각은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로 판단된다.

##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딜레마를 경험한다. 한편으로는 증거와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당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가급적 피해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 처리’의 경우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위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을 다룰 때 수사관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마찬가지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위법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때에도 사건 처리가 쉽지 않다. 주된 이유는 ‘피해자 위주 수사’의 부담 때문이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피해의 우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역시 부담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사지침이나 매뉴얼은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객관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관들은 수사현실을 동떨어진 부당한 ‘수사 제약’으로 인식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방어권도 침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촬영한 CCTV 영상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달라붙어 버리면 담당수사관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관 B)

둘이 굉장히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분명히 ‘가’라고 얘길 했는데 저쪽에서는 ‘나’라고 얘길하면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맞아요?’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왜 피의자 편을 드나 이거예요. 왜 남자 편을 드나 이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수사관 F)

## 나.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수사관들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당위를 중심으로 경험하는 딜레마는 근본적으로 불법촬영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피해자에 관해서는 ‘까다로운 피해자’, ‘믿지 못할 피해자’라는 인식, 그리고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심정적 지지’가 수사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까다로운 피해자

수사관들이 특별히 까다롭게 여기는 유형의 피해자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피해자들을 대할 때 수사관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종종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한다. 까다로운 피해자 중 ‘과민한 피해자’는 수사관의 말과 행동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류를 말한다. 성폭력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겪고 난 이후라서 그러한데 혹시 수사과정에 2차 피해를 입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다. ‘트집 잡는 피해자’는 수사관이 하는 말을 자꾸 트집 잡는 사람으로서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수사관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2차 피해 문제도 알고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을 꼬투리 잡아 문제를 삼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생각한다. ‘항의하는 피해자’는 수사절차와 결과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거센 항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곤 한다. 또한,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저런 질문을 할 때면 자신을 가해자처럼 취급한다고 항의를 경우도 있다.

예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상적인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정상적인 분들도 예민해질 수 있고 원래 예민했던 분들은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민하셨던 분이 엄청 많았어요. (수사관 F)

조사하다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을 꼬리를 잡는 거죠. 물론 개중엔 조금 덜 주의해서 말을 잘못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탁 무는거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경찰관이 그런 것처럼 나오잖아요. 전혀 아닌데. (수사관 A)

## 믿지 못할 피해자

경우에 따라 수사관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를 마주 대할 때도 있다. 객관적 범행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의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주장을 무작정 수용할 수도, 그렇다고 드러나게 반박할 수도 없는 처지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 가급적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에 더욱 치중하게 된다. ‘믿지 못할 피해자’ 중 ‘거짓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거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가 남편에게 들켜자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진정성 없는 피해자’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불순한 의도가 감춰진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이다. 피해자의 태도가 ‘전형적인 피해자’와 다르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신고한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사관들은 의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도 피해자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피해자 책임’은 수사관들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연인관계에서 상호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했다면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해자가 억울한 경우도 많거든요. 피해자가 거짓말해서. 저희가 봐도 뻔히 거짓말하고 오바하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만 지원 다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전 돈이 아깝다 생각 하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깝다. (수사관 A)

야는 사람의 경우 관계가 괜찮았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은 못해요. 그냥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하는 거니까. (수사관 C)

## 가해자에 대한 심정적 지지

일부 수사관들은 불법촬영 가해자를 대할 때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수사해야 하는 책무를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인식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중적 인식은 수사관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처리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해자 처지 공감’은 가해자들에게 부과될 형사 처분과 사회적 비난의 무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어떤 수사관은 과거에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자 이를 비판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떠올렸다. 또한 직장을 잃고 가정이 깨지는 등 형사 처분에 수반되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타격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가해자의 평범함’에 대한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면접에 참여한 다수의 수사관들은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과 비교할 때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대부분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에 속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수사관들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향해 느끼고 있는 비난가능성과 가벌성을 약화시키며, 이로 인해 불법촬영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일반의 엄벌주의 정서와 마찰을 빚게 된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개인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에게 알려지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죠. 잘못은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사관 D)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같이 보여요. 평범한 대학생이나 일반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예요, 대부분. 보기에는 가정에서도 원만하고, 특별한 조현병 같은 것도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예요. (수사관 C)

## 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특수한 조건이나 배경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8). 불법촬영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효율적인 수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 해결의 난관’, ‘열악한 수사 환경’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건 해결의 난관

수사관들은 불법촬영 수사에 있어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먼저 ‘가해자 특성의 어려움’으로서 피해자가 신고할 때 가해자를 특정해주지 않으면 추후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증거 인멸’의 문제가 있는데 가해자가 휴대폰을 바꾸거나 없애버리고 피의사실을 부인해버리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가능한 신속하게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증거 확보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실제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일반인들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맡기면 휴대폰에 저장된 증거들이 모두 복원되는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 나오는 휴대폰은 일단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정 휴대폰은 보안기능이 강력해서 디지털 포렌직으로도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거를 찍었을 때 누구랑 사귀고 있었는지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솔직하게 없거든요.... 웬만하면 특정해서 오시게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밝혀내기 어려워요. (수사관 F)

(가해자가) 특정이 됐지만 이미 디지털 증거랑 다, 휴대폰을 바꾸든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 경우 이제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바꾸고, 증거가 없는 상태고 하나니까. (수사관 E)

## 열악한 수사 환경

열악한 수사 환경도 실제적 진실 규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과중한 업무부담’은 주로 수많은 증거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성착취물에 자꾸 노출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낀다. ‘수사 인력 부족’의 문제는 과도한 업무부담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 부서에 근무하려는 경찰관이 없고 특히 피해자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수사관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사 지원 미비’를 주장하는 수사관들은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기에 시간,

예산,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인정받지 못함’은 고생하는데 비해 승진이나 표창 등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자칫 문제라도 생기면 비난만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다.

이 사람은 계속 치마 안쪽만 촬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계속 보다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이걸 계속 보면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어떻게 좀 상담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다... 자꾸 치마를 보면 그런 부분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수사관 B)

여청과 업무가 폭탄업무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다 여기 안 오려고 합니다.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오려고 그러지...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부서가 여청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지원이랄지,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 승진이랄지 그런 거에 있어선 뭐가 없고, 남의 자식같이 되어버리고. (수사관 C)

## 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정도와 양상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행위자가 취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한다(Strauss & Corbin, 1998). 수사관들이 실제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언론이 불법촬영범죄수사를 다루는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마지막으로 불법촬영범죄의 문제가 얼마만큼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피해자 고통 이해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는 심적 고통을 이해하는 정도는 수사관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먼저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해하는 수사관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남성수사관에게 보인다는 점도 수치스러워 한다는 걸 알고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새삼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이용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아무 이유 없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수사관들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피해자’는 자신을 찍은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식이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이런 경우는 트라우마가 생기세요. 그분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공중화장실을 못가신데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관계를 할 때도 다른 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이불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고, 만약 한다고 하면. (수사관 F)

카메라 피해자들은 이게 어디 유포되고 떠다닐까봐, 그런 두려움이 엄청 크다는 게 저 같아도 이해되거든요. 저 같아도 진짜 찍혔으면, ‘내 몸이 어디 돌아다니고 있겠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수사관 A).

### 가해자 심리 인식

수사관들은 불법촬영범죄의 일차적인 원인으로서 가해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적 특징들을 지목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해자의 반복적 습성’은 대개 불법촬영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없는데 그 이유가 성적만족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습관이라고 보는 인식이다. 수사관들은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 사이의 차이가 ‘독특한 성적 취향’에 있다고 이해한다.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과도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대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심한 가해자’에 속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은 채 저지른 ‘죄의식 없는 가해자’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충동적 가해자’로서 호기심에 이끌리거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부류에 속한다.

외국 영화 보면 성폭행범이라고 하면 엄청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취향이 좀 틀리다고 해야 하나. 약간 생각을 잘못된다고 해야 하나. (수사관 D)

요즘 동영상 하도 많이 유포되어 가지고 그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찍어서 걸리면 미

안하다고 사과하면 됐지, 별거 아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수사관 H)

이런 성범죄자들은 거의 개인적인 문제인거 같아요.... 정신병적인? 자기 욕구를 제어 못하는 그런 거 같아요.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거를. 자제력이 부족한 거 같아요. (수사관 A)

### 언론에 대한 인식

수사관들은 불법촬영 관련한 언론보도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러한 인식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사관들이 느끼는 ‘언론보도의 부담감’은 주로 피해자 조사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 이를 의식해서 수사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단지 경찰 일부의 문제를 확대해석해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가중하고 경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대한 ‘언론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조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엄청 많고 경찰관이 하는 말을 꼭해해서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조심스럽습니다. (수사관 C)

저도 경찰관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 쪽에 서다보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터트리면 잘하고 있는 경찰관을 사기가 되게 저하되잖아요. 2차 피해,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 (수사관 F)

### 사회 환경적 원인 인식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행위자 중심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사회 환경적 요인 중심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수사관들이 담당하는 사건 및 관련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은 최근 불법촬영 사건의 증가가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중매체의 영향’ 차원에서는 TV 속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찍어서 방영하는 관음증적 사회 분위가 만연해 있고 뉴스를 통해 자꾸 불법촬영 사건을 접하다보니 이로 인한 모방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되는 ‘음란물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

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지금 텔레비전 봐도 얼마나 찍는 게 많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밥 먹고 다니는 거, 남의 집 들어가는 거,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게 멀리서 보면 다 몰카예요. (수사관 D)

성적 호기심이죠, 소장용. 대개 음란물의 영향이 크죠. ‘아 이런 영상은 나도 한번 직접 찍어보고 직접 갖고 싶다.’ (수사관 E)

### 마.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중심현상에 대응하거나 이를 조정하려고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수사관들이 경험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극하지 않는 표현’과 ‘피해자 배려와 공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극하지 않는 표현

수사관들은 조사과정에 가급적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한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나 반발을 최소화하여 문제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말조심하기’는 수사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고통하는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표현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이다. ‘신중한 단어 선택’은 ‘말조심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전략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조사의 목적과 피해자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적절한 타협안 같은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피해자가 반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만 할 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덜 자극적인 단어를 찾아내어 활용하는 방식이다.

진짜 조심스럽고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말조심하고 수위를 조절해서 사람 봐서 이야기를 하죠 ... 수위조절 못하면 큰일 나죠. (수사관 H)

저는 순화시켜서 얘기해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

나요?’라고 얘기를 해요. 반항이라는 말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렇게 순화를 해서. (수사관 F)

### 피해자 배려와 공감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배려하고 심정에 공감해 주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수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로부터의 항의를 방지하고 동시에 최대한 협조를 얻어내는 전략을 취한다. 앞서 설명한 ‘자극하지 않는 표현’이 소극적인 전략이라면 ‘피해자 배려와 공감’은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해자 배려하기’는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거나 피해자의 성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이에 맞추어 조사방식을 결정하거나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서 안정시키는 등의 노력을 의미한다. ‘피해자 기분 맞춰주기’는 피해를 당해 예민해진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질문하고 진지한 태도로 수사하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신뢰 얻기’는 수사관이 먼저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한 뒤 피해자의 편에서 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방식이다.

카메라이용촬영도 성범죄인데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른 형사사건이랑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수사관 H)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 ‘네가 나를 믿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들어가면 그냥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감정이던지 상황이던지 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어서. (수사관 F)

### 바. 결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수행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직업적 의무 수용’으로 나타났다.

#### 직업적 의무 수용

‘경찰로서 임무 인식’을 통해 수사관들은 힘들더라도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

고 간혹 힘들게 하는 피해자를 만날 때에도 참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수사관들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있어서 ‘적극적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범죄자를 최대한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더 피해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 H)

진짜 피해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조건만남으로 받은 돈도 뺏기고 강도해가지고 돈도 뺏기기도 하고 완전히 이용당했더라고요, 여자애가. 처음에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아 이거 불기소네’ 했는데,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해서 제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조사하고 면담하고 진술조사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 H)

### 3. 선택코딩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경찰로서 의무 찾기’로 상정했다.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수사관의 역할과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갈등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자칫 피해자를 자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초래할까봐 우려스럽다. 또한 간혹 거짓으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강조하는 분위기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매뉴얼의 지침은 실제적 진실의 규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쉽게 증거가 인멸되기도 하고 디지털 포렌직 기술의 한계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업무는 과중하고 지원은 미비하고 성과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근무조건으로 인해 수사관의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수사관들은 피해자 조사과정에 말을 조심하고 신중한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기분을 맞춰주며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와 같은 행동전략은 한편으로는 2차 피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수사관이 취하는 행동은 각 수사관이 피해자, 가해자, 언론, 불법촬영의 원인 등에 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에 의해 조절된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얼마나 공감하는지, 가해자의 심리적 기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불법촬영 사건을 다루는 언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불법촬영의 문제를 얼마나 사회 환경의 책임으로 돌리는지가 수사관의 작용 및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마침내 수사관은 경찰이라는 직업적 의무를 수용하여 수사과정에서 대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유지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범죄 수사관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88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범주는 까다로운 피해자, 믿지 못할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심정적 지지,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 사건 해결의 난관, 열악한 수사 환경, 피해자 고통 이해, 가해자 심리 인식, 언론에 대한 인식, 사회 환경적 원인 인식, 자극하지 않는 표현, 피해자 배려와 공감, 직업적 의무 수용이었다.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불법촬영 사건의 경찰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이원화된 태도를 보였다. 먼저 소위 ‘진정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민과 불쌍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불법촬영범죄는 일반 성폭력범죄와 달리 비교적 사건발생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주로 객관적 증거의 유무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진정한 피해자’에 속한다고 보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거나 지나치게 예민한 상태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피해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고

간주하였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조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평가가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관의 평가와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pohn, White & Tellis, 2014).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성향과 진술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고 그 결과 신뢰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불법촬영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은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촬영 가해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에 속하지 않으며 대부분 평범한 부류에 속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주로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일부 수사관들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처벌이 가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그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해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겪게 될지도 모를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심정적 차원에서 공감하는 수사관의 태도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민이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 정도로 여기는 태도와 가해자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태도가 결부될 때 자칫 사건 자체의 심각성 및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간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 피해자와 가해자를 향한 이와 같은 인식은 수사관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적 상황을 조성하였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억울함과 고통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반면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통계검정의 차원에서 말하면 전자의 경우는 2중 오류를, 후자의 경우는 1중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형사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1종 오류의 위험성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로부터의 신고나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와 진술을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수사관들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호소하고 있는 고충은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2차 피해의 우려와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강조되면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로 인해 예민해져 있거나 수사관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자를 상대할 때 수사관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때로는 ‘최소주의’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심적 상태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은 길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태도만으로 사건 자체에 대해 부당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할 때 조사과정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실제적 진실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남성수사관의 경우 근본적으로 남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여성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을 세밀하게 이해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수사관 증원을 포함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의 인력확충과 과중한 업무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여성수사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수사관의 수가 부족한 수사팀이 많기 때문에(특히 지방의 경우) 여성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남성수사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여성수사관이, 가해자는 남성수사관이 각각 조사하게 되면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유능한 여성수사관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과중한 업무 및 피해자 민원과 언론보도의 부담감으로 인해 여성청소년과가 기피부서 중의 하나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 해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수사현실을 반영한 표준조사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만들어 일선 수사관들에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수사관들은 이러한 표준조사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의 표준조사모델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관이 준수해야 할 질문방식과 질문내용 그리고 피해자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 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지침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는 기여할 지 몰라도 수사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향후 표준조사모델은 수사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제적 진실발견과 2차 피해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어 수사관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로는 처음으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불법촬영 범피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과정에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2차 피해의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었다. 이에 반해 불법촬영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찰수사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관들의 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범주화하고 범주들 간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의미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연구대상자인 경찰관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그리고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불법촬영범죄를 포함한 여러 성폭력 관련 연구들과 구별된다. 다만 주로 연구자료 자체에서 기인한 한계가 존재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 참여자가 8명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에 면접시간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방법 상의 한계를 보완한 후속연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혜림 (2019). 수사경찰의 성범죄에 대한 2차피해 인식요인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671-681.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철 · 조현욱 (2016).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법학연구, 57(3). 151-177.
- 김정겸 · 김지숙. (2010).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대학생의 수업참여 특성 이해. 한국교육, 37(4), 149-185.
- 김현아. (201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9(2), 1-32.
- 문성도. (201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법학논총, 27, 103-121.
- 박혜림. (2017). 몰래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과정책 23(3), 101-126.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 배상균. (2016).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1), 199-227.
-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경찰편)
- 송승현. (2017).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논총 24(1), 337-364.
- 신성대. (2009). 성폭력 범죄 수사에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분석,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호. (2010). 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21(2). 9-54.
- 심현정 · 신소라 · 조운오 (2017). 대학생의 일상활동이 지하철 성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9(1), 39-61.
- 이명신 · 양난미. (2011). 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 요인 -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복지학회, 2, 159-185.

- 이명신 · 양난미 · 김정희 · 문유정. (2015).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가 연계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관련 경찰과 상담사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43-85.
- 장미정 ·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9-137.
- 장미혜 · 이미정 · 고현승 · 김현아 · 노성훈. (2019).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윤경. (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 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19(3), 113-144.
- 정혜욱. (2018).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 *한국법학회*, 18(3), 55-88.
- 조운오. (2016). 성범죄 유형 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2(4), 147-170.
- 한유리. (2018). 초보연구자를 위한 질적 자료 분석 가이드 피와이메이트
- 홍영은 · 박지선 (20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18.
- Ahrens, C., Campbell, R., Ternice-Thames, K., Wasco, S., & Self, T. (2007). Deciding whom to tell: Expectations and outcomes of sexual assault survivors' first disclosur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38-49.
- Braun, V., & Clarke, V. (2016). Thematic analysis. In E. Lyons & Coyle (Eds.), *Analysing qualitative data in psycholog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Campbell, R. (2006). Rape survivors' experiences with the legal and medical systems: Do rape victim advocates make a difference? *Violence Against Women*, 12, 30-45.
- Campbell, R., Wasco, S., Ahrens, C., Self, T., & Barnes, H. (2001). Preventing the "second rape": Rape survivors' experiences with community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1239-1259.

- Chen, Y., & Ullman, S. E. (2010). Women's reporting of sexual and physical assaults to police in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16, 262-279.
- Edward, K. E., & MacLeod, M. D. (1999). The reality and myth of rape: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pert Evidence*, 7, 37-58. doi: 10.1023/A:1008917714094
- Estrich, S. (1987). *Real rap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eist, A., Ashe, J., Lawrence, J., McPhee, D., & Wilson, R. (2007). Investigating and detecting offences of rape. Project Report. Home. Office, London, UK.
- Grubb, A., & Turner, E. (2012).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 Review of the Impact of Rape Myth Acceptance, Gender Role Conformity and Substance Use on Victim Blaming.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17(5), 443-452. doi: 10.1016/j.avb.2012.06.002
- Koss, M. P. (1993). Rape: Scope, impact, interventions, and public policy responses. *American Psychologist*, 48, 1062-1069.
- Koss, M. P., Bachar, K. J., Hopkins, C. Q., & Carlson, C. (2004). Expanding a community's justice response to sex crimes through advocacy, prosecutorial, and public health collabor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1435-1463.
- Krahe, B. (1991). Police officers' definitions of rape: A prototype study.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 223-244. doi:10.1002/casp.2450010305.
- LaFree, G. D. (1989). *Rape and criminal justic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xual assault*. Belmont, CA: Wadsworth.
- LeDoux, J. C., & Hazelwood, R. R. (1985). Police attitudes and beliefs toward rap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3(3), 211-220.
- McGlynn, C., & Rackley, E. (2017). *Image-Based Sexual Abuse*. Oxford Journal

- of Legal Studies, 37(3), 534 - 561. doi.org/10.1093/ojls/gqw033
- Sleath, E. & Bull, R. (2017). 'Police perceptions of rape victims and the impact on case decision making: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102
- Spohn, C., White, C., & Tellis, K. (2014). Unfounding sexual assault: Examining the decision to unfound and identifying false reports: Unfounding sexual assault. *Law & Society Review*, 48(1), 161-192. doi:10.1111/lasr.12060
- Stern, P. N.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Image (Indianapolis)*, 12(1), 20-23. doi:10.1111/j.1547-5069.1980.tb01455.x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s, Inc.
- Venema, R. M. (2014). Police Officer Schema of Sexual Assault Repor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5), 872-899. doi:10.1177/0886260514556765
- Ward, C. (1988). The Attitudes toward Rape Victims Scale. *Psychology and Women Quarterly*, 12(2), 127-146. doi.org/10.1111/j.1471-6402.1988.tb00932.x
- Wentz, E., & Archbold, C. A. (2012). Police Perceptions of Sexual Assault Victims. *Police Quarterly*, 15(1), 25 - 44. doi:10.1177/1098611111432843
- Zvi, L., & Shechory-Bitton, M. (2020). Police Officer Perceptions of Non-Consensual Dissemination of Intimate Images, *Frontiers in Psychology*, 11, doi:10.3389/fpsyg.2020.02148

## Understanding the Schema of Police Investigators on Image-Based Sexual Abuse: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Roh, Sung-hoon\*, Ahn, Jaekyu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police investigators toward image-based sexual abus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8 investigators and analyzed the data using the Strauss and Corbin's(1998) ground theory method. In open coding, 88 concepts, 39 subcategories and 13 categories were derived. The axial coding identified 'difficult victims,' 'untrustworthy victims,' 'sympathy with perpetrators' for causal conditions, and 'dilemma in searching for substantive truth' for central phenomenon. Context included 'obstacles to solving cases,' 'inferior working environment,' and intervening conditions included 'understanding victims' pain,' 'perceiving perpetrators' mind,' 'perception of the media,' 'perceiving social environment as causes of the problem.'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avoiding provocative expression', 'care and compassion for victims' and the consequence was 'accepting occupational mandates.' In selective coding, the main theme was 'finding occupational mandates as a police officer between searching for substantive truth and taking care of victims. Finally,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tackling the problems taking place in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of image-based sexual abuse.

❖ key words: Image-based sexual abuse, sexual assault, criminal investigator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analysis

---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riminology.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투고일 : 11월 30일 / 심사일 : 12월 21일 / 게재확정일 : 12월 29일